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포함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010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포함 (안 제17조제1항제4호)	2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010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4.

다. 회 부 일 : 2025. 4.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3. 검토의견

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포함(안 제1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u>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u>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체육·공공시설(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공원을 포함한다)</u>-----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계획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맨발걷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증진 및 심리적 회복 등을 위한 웰니스(wellness)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와 맞물려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여 서울특별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¹⁾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음.

최근 신도시 개발이 대부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상 ‘공원’은 이미 기반시설에 포함²⁾되어 있으므로 공공주택지구별 여건에 맞게 맨발걷기공원을 선택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체계상 맨발걷기공원 관련 사항은 공원의 종류,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

1) 2025년 5월 기준 174개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 전북, 제주, 화성, 시흥, 평택, 원주, 삼척, 천안, 세종, 상주, 포항, 목포 등)

2)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립³⁾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 개정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맨발걷기공원이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거환
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모든 공공
주택지구애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원계획의 자율성 및 법체계
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74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 의안번호 : 2208891)이 공
원조성계획에 맨발걷기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